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6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김소희·조은희·주진우

김정재 · 이종배 · 권영세

우재준 • 이달희 • 김대식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 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 제33조의2의 제목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재생원료 사용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생원료"를 "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로, "제조자등은"을 "제조자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품·용기에 표시"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확인을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생 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	
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	
증하여야 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
	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	<u>3</u> . <u>환경부장관</u>
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	
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 재료 • 용기 3. (생략)

③ ~ ⑧ (생 략)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 확인)

- ① 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 제조자 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는 경우 ----- 확인-----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표시를 신청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 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 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 |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
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
게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 ~ 1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재생
원료 사용비율의 표시·확인
<u>을 받은 자</u>
② ~ ⑥ (현행과 같음)